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경영실적평가 제도 도입 등〉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44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95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 도입	3
2. 기간장 해임 건의 요건 추가	6
3. 지역발전 성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9

I.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34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5.

다. 회 부 일 : 2026.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

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특별경영실적평가 제도 도입

현 행	최혁진의원안
<신설>	○ 특별경영실적평가 제도 도입(안 제48조의2 신설) -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경과 시 또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 실시 가능 - 세부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 위임

개정안은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세부 기준·방법·절차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¹⁾는 재정경제부장관

1)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5. 10. 1.>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이 연차별 보고서, 경영계약 이행 보고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효율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체계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을 적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관장 취임 초기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무위기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실질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 추상적인 요건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일·유사 상황에서도 평가 실시 여부가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의 판단 기준과 특별평가의 개시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5.>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²⁾, 특별 평가의 빈번한 실시 또는 자의적 운용 시 기관장의 단기성과 위주 경영을 유도하거나 정책적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 평가 실시의 예외성·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남용 방지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현재 경영평가지 기관장의 경영계약이행 성과 및 재무건정성 유지 노력·성과를 반영하여 실시 중으로 현 제도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제도 신설의 실익이 낮고, 특별경영평가는 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기관장 해임 건의 요건 추가 (안 제22조)

현 행	최혁진의원안
○ 기관장 해임 건의 요건 - 법령 위반, 직무태만 등	○ 기관장 해임 건의 요건 (안 제22조) - 법령 위반, 직무태만 등 - <u>임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포함</u>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임 요건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³⁾는 기관장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해임 사유로 추가하고 있음.

이는 임직원의 비위 등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임 건의 요건의 확대를 통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

3)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가 기관장에 대하여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직무’의 범위에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역시 현행 규정에 따라 해임 요청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으로 포괄적 예시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특정 사유인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을 별도로 명문화할 경우 법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직무 태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은 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관장의 책임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과도한 개인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책임 귀속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해임요구 요건에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도 포함될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특정 사유만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직무 태만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포괄적 예시규정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지역 발전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안 제48조)

현 행	최혁진의원안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신 설> -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 된 사항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u>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기여 성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절성, 재무운용의 건정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경영실적평가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의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성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체계상 법률에는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원칙 및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등은 시행령⁵⁾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

4)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5)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

이 법률에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도 경영평가편람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미 경영평가의 기본원칙과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기준·방법 및 세부 평가지표는 시행령과 평가편람에 위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평가지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u>평가</u> 등	12. 제48조 및 제48조의2----- ----- --- <u>평가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u> --- -
13. ~ 17. (생략)	13. ~ 17. (현행과 같음)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u>경우</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 ----- ----- ----- <u>경우</u> <u>또는 소속 임직원</u> 에 대한 <u>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략)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⑥ ~ ⑩ (생략) <u><신설></u>	과 같음) ⑤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특별경영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u>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실시기준, 방법, 절차 및 특별경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151

참고 1

기관장 평가 지표 ('26년도 평가편람)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계	비계량	계량
기관장 리더십	기관 설립목적 구현 및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	6	6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6	6	
	조직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	6	6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 이행	6	6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6	6	
	소 계	30	30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성과	기관장 성과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의 합리성	6	6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6	6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성	6	6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의 효율성	6	6	
	성과목표치 달성	26	13	13
	- 성과목표치 달성도	(13)		(13)
	- 성과목표치 달성의 질적 우수성	(13)	(13)	
	소 계	50	37	13
기관 경영성과	기관평가 결과 일부 반영 *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노사관계	20		20
	소 계	20		20
전체 합계		100	67	33

참고 2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26년도 평가편람)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0.3), 창업기업제품(0.2), 기술개발제품(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 여성기업제품(0.2), 장애인생산물(0.4), 국가유공자자활용사춘생산물(0.2)
	지표정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SOC, 에너지) : 비계량 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 비계량 2.5점 -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및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상생결제 등 동반성장평가 결과(중기부) 반영, 혁신지향 공공 조달(창업기업·기술개발제품구매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여부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협력 사업 발굴 및 판로·금융지원 등 ②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인턴십·멘토링·장학금 지원 등 * 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등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물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③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알리오플러스 예약 등 이용실적, 이용자 편의, 시설 개방 안내·홍보, 우수 개방시설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주차장, 체육시설, 회의실, 강당, 음식점 용도 시설 등